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1279
----------	------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 의 자 : 장경태 의원 등 170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박상용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상용

직 위 : 검사

탄핵소추사유

피소추자는 검사인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그와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고, 피의자 이화영에 대한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막고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강제함으로써 피의자 이화영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

피소추자는 공소제기 전에 뇌물죄의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정치·적 중립에 반하여 불공정하게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여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수차례 자행하였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성이 매우 큰바,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2019년 2월까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수원지검에 근무하면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의 주가조작 등 개인 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김성태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김성태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가.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 행위

피소추자는 2019. 1. 8. 저녁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나. 수원지검 검사로서의 위법 행위

피소추자는 김성태의 개인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중 김성태가 자신이 지배하던 쌍방울그룹을 통해 2019년 1월 200만 달러, 같은 해 4월 300만 달러, 같은 해 11월경 300만 달러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김성태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혐의를 갖고 전 민주당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1)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행위 및 위법한 접견 허용

① 피소추자는 김성태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로 접촉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심증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피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피의자 방용철,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피의자 안부수를 수시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자신의 검사실 및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고 표시된 방에서 동시에 머물며 서로 사건에 관한 진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쌍방울그룹 임직원 여러 명이 그 방에 동시에 함께 있도록 한 바 있다.

② 피소추자는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교도관들을 영상녹화조사실 밖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의자 김성태와 방용철, 쌍방울 직원 박상웅 등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였는데, 이 때 피소추자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 회덮밥, 국물요리를 배달하게 하였고, 김성태가 소주를 흰 종이컵에 여

러 잔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피소추자는 2023. 3. 18. 오후 쌍방울 임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안부수의 휴대폰을 안부수의 딸에게 돌려 주기 위해 안부수의 딸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안부수의 핸드폰을 돌려 주었고,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에 피의자 김성태, 피의자 안부수, 쌍방울 임원 A 등 쌍방울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동시에 있게 하였으며, 쌍방울 그룹이 오피스텔을 제공하기로 한 안부수의 딸을 안부수와 만나게 할 경우 안부수가 경기도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자리에 안부수의 딸을 동석하게 하였다.

④ 피소추자는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로 접촉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불러 대북송금 수사에 협조적인 김성태, 방용철과 각기 면담하게 하였다.

2) 제3자를 통한 허위 진술 회유 행위

① 피소추자는 이화영이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목적으로 2023년 5월경 이화영

과 김성태 2인을 수원지방법검찰청 별실에서 면담하게 하면서, 김성태로 하여금 “형님! 평생 징역 살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어요.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형님이 이재명 보호한다고 누가 알아 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이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면 재판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달라졌을 때 똑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검찰이 하자는 대로 협조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변호인들 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하게 하여, 김성태를 통해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였다.

② 피소추자는 이화영이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목적으로 2023년 5월경 이화영과 방용철 2인을 수원지방법검찰청 별실에서 면담하게 하면서, 방용철로 하여금 “김성태 회장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부지사님 혼자 못 버텨요.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협조하면 저도 부지사님이 잘 되도록 법정 증언을 할게요.”라고 말하게 하여, 방용철을 통해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였다.

③ 피소추자는 이화영이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취

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목적으로 2023년 5월경 이화영에게 검찰 고위직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어 양자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만나도록 하였다. 피소추자는 조재연 변호사로 하여금 이화영에게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이화영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라고 말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조재연 변호사를 통하여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였다.

④ 피소추자는 김성태의 변호인인 유재만 변호사 등 3인 내지 4인의 변호사로 하여금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 달라. 검찰 고위층과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이들 변호사를 통하여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였다.

3) 직접적인 허위 진술 회유 내지 강요 행위

피소추자는 대북송금 혐의로 당시 경기도지사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그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해 구속 중인 이화영 부지사를 수원지검으로 불러 그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회유하거나 강요하였고,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변호사 참여 없는

조사를 강요하였다.

① 피소추자는 2023. 4. 9. 이화영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대북송금을 한 것을 인정하라며 “내 선에서 마무리 짓자, 윗분들한테 체면이 있다.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인정하면 다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이화영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였다.

② 피소추자는 2023. 5.경 이화영에게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자들이 잘 협조하고 있어서 부지사님도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지사님 변호인들의 변론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했는가?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③ 피소추자는 2023. 5. 20. 이후 이화영에게 “이런 진술서 갖고는 상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 “형량이 제일 무거운 특가법위반(뇌

물)죄로 김성태가 잘 얘기할 수 있고, 증거인멸교사도 당연히 잘 얘기될 것이다.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방조범으로만 약하게 끝낼 수 있다.”, “부지사님 보세요.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잖아요.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할 겁니다. 김성태 동생도 보석으로 나갈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예요.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회유했다.

④ 피소추자는 2023. 6. 9. 이화영에게 “부지사님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서, 나는 힘을 쓸 수 없다. 내 선을 떠날 것 같다. 시간이 없다. 오늘 송민경 검사에게 조사받으시라. 상부의 압박이 심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화영에게 추가적인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⑤ 피소추자는 2023. 6. 14. 이화영이 조사받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A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기 위해 찾아오자, 그 변호사에게 “변호사 맞느냐?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달라. 변호인 선임계는 냈느냐? 여기를 어떻게 들어 왔는가? 공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A 변호사의 이화영에 대한 검찰 조사 참여를 막았고, 결국 이화영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제13회차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⑥ 피소추자는 2023. 6. 15. 이화영이 “B 변호사가 검찰에 나오지 않았으니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했으나, 완강한 자세로 “변호사 없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결국 이화영은 변호사 없이 제14회차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⑦ 피소추자는 2023. 6. 16. 이화영에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인정했으니, 스마트팜 비용도 김성태가 경기도와 이재명을 대신해서 지출하였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진술을 해야, 제3자 뇌물죄에서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되고, 검찰에 협조하였으니 선처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화영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회유했다.

⑧ 피소추자는 2023. 6. 18. 피의자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직원들을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여진 공간에 모여 있게 하고, 육회비빔밥, 연어요리 등을 먹게 하였으며, 이화영에게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이화영을 회유했다.

⑨ 피소추자는 2023. 6. 21. 이화영이 “C 변호사가 국정원 압수수색에 참여하기로 하여 검찰에 나오지 않아 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나, “변호사 없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이화영은

변호사 없이 제17회차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⑩ 피소추자는 2023. 6. 28. 이화영에게 “이전의 진술로는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라.”고 말하여,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강제하였다.

⑪ 피소추자는 2023. 6. 30. “이 상태로는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다. 보석이나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정하라.”고 말하여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회유하였고, 조사 중 김영남 부장 검사에게 다녀 온 다음 “보고 일자와 상황을 특정해서 진술하라.”고 말하였으며, “부지사님 진술에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해 준다는 정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으면, 그 결과도 보고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이화영의 추가적인 허위 진술을 강제하였다. 이에 이화영은 조사에 참여한 C 변호사에게 “이재명 지사가 일정이 있는 날이 그 즈음 언제이냐.”라고 물어 C 변호사로부터 “2019. 7. 29. 월요일에 여의도 쪽 일정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 이재명 지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

도록 “2019. 7. 29. 월요일 오전 10시경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4) 검사로서의 직무유기 행위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여야 하고, 수사한 결과 죄가 되면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와 방용철이 2018년부터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과 박철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을 신고 없이 접촉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범하였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여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와 방용철이 자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을 포기하였다.

5)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피소추자는 그의 상관인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및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과 공모하여 2023. 9. 19.경 진선우 뉴데일

리 기자에게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제3자인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 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총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피의사실이 상세히 기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소제기 전에 교부하여 같은 날 뉴데일리를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뇌물죄의 피의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침해,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 진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는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들어 그 정치 세력속에 속한 정치인과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봐주기식으로 수사하고, 그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과도하게 수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의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여러 차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유하거나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피의자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럼 피소추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과 검찰청법상의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을 위하여 그에 반대되는 정치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과도하게 행사한바,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의 헌법상 의무 위반이자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준수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 또한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주체로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사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헌법 제12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를 하여 법적 조언을 하거나 신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로서, 수사기관이 이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피의자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조력하기 위해 찾아온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막아 변호사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피의자를 강요하여 수차례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

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피소추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되어 궁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회유하고 강요함으로써 형사상 직권남용죄를 범하고, 피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과도하게 수사권을 행사한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 형법 위반

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검사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수사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여서도 아니 되고, 이를 강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수사권을 남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구속된 피의자 이화영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북송금 관련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바, 이는 이화영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진술을 하게 하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

② 미결수용자가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형집행법이 적용되는바, 교도관은 미결수용자의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하고, 미결수용자로서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

을 금지할 직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피소추자는 피의자 김성태, 안부수 등에 대한 외부인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별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화영을 김성태, 방용철 등과 같은 방에서 면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한 교도관이 형집행법 제41조 2항이 정한 접견과 제81조가 정한 분리수용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바,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다.

2)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행할 직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김성태와 방용철이 북한 인사들을 신고 없이 접촉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범하였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와 방용철이 자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측의 대북송금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소추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인바, 피소추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

3)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 손상죄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공무소인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검찰청 청사 내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 손상죄를 범하였다.

마. 헌법 제27조 4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2항 위반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2항은 「검사 ·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및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소추자는 공소제기 전에 기자에게 대북송금 관련 피의사실을 공표한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인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누설한 것이 된다.

즉, 피소추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7조 공무원상 비밀누설죄,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바.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제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함으로써, 수사기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법률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 이화영에게 김성태의 변호사들을 소개하

여 수원지방검찰청 내 별실에서 따로 만나게 한바, 이는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및 제81조(분리수용) 위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조는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함으로써, 수용자가 교정시설을 벗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형집행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고 정하고, 제81조는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는바, 피의자 김성태 등을 쌍방울 임직원이 접견하거나, 피의자 안부수를 피의자의 딸이 접견할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을 어기고 수원지검 내 검사실 또는 별실에서 접촉차단시

설도 없이 이들을 만나게 한바,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접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로 접촉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를 동시에 수원지방검찰청 같은 방에 불러 서로 말을 나누게 하였고, 이화영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불러 대북송금 수사에 협조적인 김성태, 방용철과 각기 면담하게 한바, 형집행법 제81조 분리수용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탄핵의 필요성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형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의 관행상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파면될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탄핵소추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 할 것이다.

가.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27조 제4항 및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제243조의2, 형법 제123조, 제122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41조 제1항, 변호사법 제36조,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및 81조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 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1) 피소추자의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

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헌법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헌법위반을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

나)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특정 정치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회유하고 강제한바,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형법상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피소추자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자신의 심증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피의자들을 검찰청 검사실

이나 별실에 모여 자유롭게 진술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바, 이는 형집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표로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을 조장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소추자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행한 중범죄인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아니한바, 이는 직무유기라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증언 거래 혹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면, 피소추자는 공소제기 전에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죄에 대한 피의사실을 기자에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하기까지 하였다.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없이도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인권의 침해를 결과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위법한 목적으로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 참여를 막은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위법행위는 정치적 목적에 경도되어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중차대한 위법이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 출신이자 자신의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정당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 강요라는 직권남용, 특정 피의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통한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수사권을 남용한바,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것이고, 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국가 형벌권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대원칙과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의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해온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바, 이는 피소추자에 대한 과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과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범위만 행위의 중요성’과 ‘과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 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과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과면의 정당성이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는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27조 제4항 및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제243조의2, 형법 제123조, 제122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41조 제1항, 변호사법 제36조,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및 81조 등을 위반했

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 ① 2023. 12. 28. 오마이뉴스 <[단독] 이화영 '옥중노트'에 적힌 검사의 회유 "파티 한번 하자">
- ② 상동 기사 내용 중 <이화영 공개 「허위진술 경위서」>
- ③ 2023. 9. 7. 동아일보 <말바꾼 이화영 “檢압박에 허위진술”...이재명 출석 앞두고 옥중편지>
- ④ 상동 기사 내용 중 <이화영 공개 「피고인 진술서」>
- ⑤ 2024. 4. 22. 한겨레신문 <이화영, 이번엔 “검찰이 전관 변호사 주

선해 회유">

⑥ 2024. 6. 5. 뉴스타파 <[쌍방울 내부자 폭로]① "검찰청서 김성태 회장과 공범들 수시로 만났다">

⑦ 2024. 6. 6. 뉴스타파 <[쌍방울 내부자 폭로]② "검사가 공범들 모아놓고, 교도관들은 밖에서 대기">

⑧ 2024. 6. 11. 뉴스타파 <[증인매수 의혹]①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금품 매수' 정황 포착>

⑨ 2024. 6. 12. 뉴스타파 <[증인매수 의혹]② 쌍방울 임원 "윗선 지시로 안부수 딸에게 주택 제공">

⑩ 2024. 6. 19. 뉴스타파 <[증인매수 의혹]③ 검찰청서 딸 만난 안부수 회장, 상봉 직후 쌍방울이 주택 제공>

⑪ 2024. 6. 21. 뉴스타파 <[증인매수 의혹]④ 안부수 딸 카톡에 '부당 거래' 정황..."아빠가 검찰과 합의했어">

⑫ 2024. 6. 25. 뉴스타파 <[증인매수 의혹]⑤ "검사와 거래" 직후, 쌍방울이 '안부수 폰' 가져갔다>

⑬ 2023. 9. 19. 뉴데일리 <[단독] "이재명, 대권 위해 대북사업 추진... '北 송명철 만찬 사진' 이화영 보고 받아">.